

■기획 거리전

우리를 괴롭혔던 일련의 성폭력 사건

때 : 5월 11일(월)~15일(금)

곳 : 생업앞

우리 주위의 일상화된 성폭력 사건들. 그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드러나는 남성중심적인 사회구조, 그리고 우리의 입장을 다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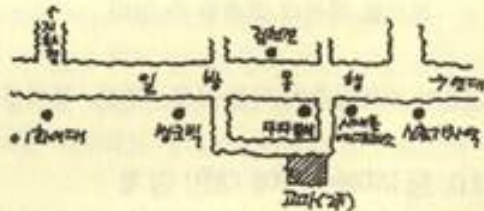
고대생 집단성폭력 사건, 연세대 익명게시판 사건, 서울대와 한양대 미팅제안엽서 사건, 그리고 최근의 온라인 성폭력 사건까지... 이화에서 담론화되었던 성폭력 사건 자보전, 우리 가슴 속 성폭력 경험을 쏟아내는 이화인 엽서쓰기, 그리고 선전전이 진행됩니다.

■이야기 거리

"내 몸에 손대지 마!"

때 : 5월 12일(화) 늦은 6시

곳 : 페미니스트 카페 <고마>



늘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내 몸을 더듬는 아저씨로부터 나를 강간한 그 이웃집 남자까지. 그러나 그 끔찍하고 역겨운 경험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건 '나만'이 당한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용기를 내어 내 주변의 여성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건 나만 어이없게 겪은 일도 아니고 내가 수치를 느낄 이유도 없는,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모든 여성들이 가지는 공통적 경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겪은 성폭력의 경험들, 나아가 내가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열받았던 일들까지... 우리의 아늑한 공간에서, 남자애들이 경멸하는 우리의 언어인 '수다'로 함께 풀어내 보자구요. 가지고 올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과, 혹은 자신을 사랑할 준비 - 그리고 차 한잔 값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 연대회의> 주최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 공청회

때 : 5월 14일(목) 늦은 5시

곳 : 대학원관 중강당

18개 학교의 여학생운동단위 연대체인 <연대회의>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을 준비하는 공청회를 주최합니다. 학교의 자치규약으로서의 학칙은 학내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며, 이를 통해 사건 해결을 위해 피해자가 밟아야 하는 지난한 사법절차의 일부를 가해자의 몫으로 돌릴 수 있고 효과적인 처벌이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가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성의 입장으로 재구성한 올바른 성폭력 담론을 보다 효과적으로 자리매김하여 성폭력 발생의 원초적인 예방이 가능한 방법이기도 하지요. 이화여대도 성폭력에 있어 성역이 될 수 없습니다. 대강당 옆 대학원관 중강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한 사람, 모두모두 오세요!

choi

내몸에 손대지 마

이화 성폭력 근절 주간 1998년 5월 11일(월) ~ 15일(금)

3대 이화여성위원회

내 몸에 손대지 마

이화성폭력 근절 주간 자료집

발행 · 3대 이화여성위원회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TEL 360-3562
편집 · 엑스사단 TEL 338-9668

- 1 총론 “내 몸에 손대지 마!”
- 4 이화여성위원회의 성폭력 사건 대응 일지
- 6 이화여대, 학내 성의식과
성폭력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 10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가인에 대하여
- 14 일정 소개
 - 기획 거리전
우리를 괴롭혔던 일련의 성폭력 사건
 - 이야기 거리
“내 몸에 손대지 마!”
 -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 연대회의〉 주최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 공청회

“내 몸에 손대지 마!”

총론

성폭력 담론은 여성의 시각에서 재구성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1. 성폭력 = 성관계

- 1) 한 여성이 거금을 도난당했다. 그녀는 경찰서를 찾아간다. 경찰은 피해자를 위해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 2) 한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다. 그녀는 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전전긍긍한다.

1)에서 돈은 그것을 도난당한 여성에게 소유되어 있다. 때문에 사회 안에서 그녀의 돈에 대한 권리는 보호되어진다. 그러나 2)와 같은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여성은 자신의 피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기대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여성의 신체에 대한 권리는 여성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로 존재하며 그것은 두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자신이 ‘데리고 놀 여자’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자식을 낳아 대를 이어줄 여자’이다. 후자의 경우 남성은 그 여성이 낳은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확증을 필요로 하고 그것은 여성에게 ‘정조’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성립된다. 때문에 가부장제 사회에서 한 여성이 정조를 잃었느냐 지키고 있느냐는 그 여성을 가치 매기는데 중심적인 요소로서 존재하며 그것의 기준은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이 되었느냐의 여부이다. 실제로 강간의 경우 법적 정의가 ‘여성의 동의없이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특정 성접근 행위’로만 규정되어 피해자는 가해자가 사용한 폭력과 자신의 저항여부를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왜 여성에 한정시키며 성기중심적으로만 사고하고 저항을 ‘입증’해야만 하는가? 이러한 왜곡된 관념들은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뒤바뀌는, 그래서 피해자가 죄인이 되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여성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성폭력을 가부장적인 소유개념으로 사고할 때 문제시되는 것은 그녀가 정조를 보호받을만한 여성인지, 그녀가 성폭력을 당하기 전에 얼마나 정조를 지키려 했는지, 즉 저항을 했는지이다. 피해 당사자인 여성의 입장과 감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그녀가 그런 짓을 ‘당할 만’하지 않았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며 동시에 몸을 ‘더럽힌 여자’라는 비난과 질책의 시선에 피해여성은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성폭력의 문제에 있어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정당화시키는 남성중심

손/대/지/마

적 사회의 권력관계를 사고해야 하며, 또한 철저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고해야 할 것이다. 정조가 아닌 성적자율권 확보의 문제로, 저항이 아닌 동의를 했는가의 여부로 문제의 인식틀을 바꿔야 한다. 성폭력은 한 여성의 성적자율권을 침해한 폭력이다. 그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고 인격을 침해한 행위인 것이다. '정조'라는 소유권의 문제로 사고하여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된 강간만이 문제되고 다른 것은 별로 문제될 게 없다는 가부장적 성인식에서 벗어나 성폭력의 개념을 확장해서 사고해야 한다.

2. 성폭력 - 임의 논리

그러나 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누군가가 성폭력을 당해도 피해를 당한 그녀의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가능성을 얼마나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단지 성차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성의 범주로 묶인 상대적 권력차도 그렇지만 실제 우리의 가부장제 권위주의 사회의 각종 조직 위계구조에서 주로 하부에 위치하는 대부분 여성에 대한 이중권력으로 다가오는 성폭력일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처음부터 거부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릴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이미 길들여진 여성성 또는 남성의 성폭력을 '남자다운' 행동의 하나로 넘겨버리는 구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199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강간 신고율은 전체의 22%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가치체계와 더불어 피해자에게서 너무나 머나먼 '법', 피해자를 대함에 있어 마치 다시 성폭력을 당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일선의 남성 공무원들, 피해를 당하고도 고소를 꺼리게 되고 고소 절차에서도 고소를 취하게 되는 많은 피해자들, 그 절차를 알고 있었어야 발생 즉시 확보해 놓을 수 있는 증거(속옷, 체내 정액 등)가 없는 경우 기소도 되지 않아 기소율이 30~40%에 머물고 마는 현실. 태어나서부터 할머니가 될때까지 그 잠재적 두려움과 '몸조심'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으면서도 그 사실을 인식할 기회마저 평생 가져보지 못하는 여성들, 바로 우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 곳곳에서 가지가지 방법으로 각개격파당하고 있는 것이다.

3. "민감하게 반응하지마."?

전에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그런 상황에 거부를 표시하면 사람들 주로 남자들은 그런다.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 나 자신으로서 살아왔던 내 몸과 내 정신이

의/회/원/위/상/이/회/원

지금 너무나 불쾌한데 그 거부감을 정당히 표현하는 것이 왜 '비정상적인 것'이지? "분위기 깨고 있네." 누구의 분위기, 과연 누구를 위한 분위기? "저래서 여자들은 사회적응력이 부족해." 당연하지, 태 같으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깨끗해야만 한다'고 세뇌받고 자란 몸과 맘을 호시탐탐 '더럽히고' 죄의식도 못 느끼는 자기는 자기 의사대로 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면서 내 의사는 있는지 없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는 - 혹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거나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며 즐거워하는! - 이중적 가치체계의 인종들이 주도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겠수? 가끔은 여자들도 그런 말을 한다. "당할 만 하니 당했겠지." 아무도, 짧은치마 입은 여자에게, 술 취한 여자에게 성폭행할 권리는 없다. "설마 내 주위에 그런 일이." 그 자신도 어릴 때, 커으며, 그리고 지금도 동문회 가면 수태 겪는 농담과 몸짓들을 기억하면서 그때그때 느꼈던 불쾌함도 같이 떠올리더라도 '그 무서운 성폭력'을 당했던 거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강간당한 것도 아니라며 왜 그렇게 수순을....." '정조'와 임신에 관계되어야만 성폭력인 것이라고 과연 누가 정했는지? "그 여자는 부끄럽지도 할까?" 왜 폭력의 피해자가 도리어 부끄러워야 할까? 만일 지금 그렇다고 해도 그럼 모두가 세상에 그런일이란 없는 듯 외면하여 숨기고 지내, 결국 나와 내 친구들과 내 딸들까지 대대손손 이런 불편함 속에 살아야만 하나?

4. 우리 손으로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우리가 속한 문화는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제도도 우리 모두를 위해 공정히 존재해야 한다. 우리에게 '가해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그것은 없어야 할 이유가 되는 성폭력의 근절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작은 곳에서부터 발견해 내고 그를 수행함은 정당하다. 힘들지 모른다는 지레 겁먹음, 나는 그와 상관없이 살 수 있으리라 믿는 근거없는 희망, 혹은 그나마 움켜쥐고 있는 작은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비겁함으로 내앞에 놓인 성폭력에 대한 결단을 주저한다는 것은 여성성을 지닌 스스로에 대한 기만일 뿐이다.

기존의 잘못된 성폭력 담론을 재구성하는 일, 우리의 현재와 옳은 방식을 바로 짚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주변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로 그 영향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포기할만큼 불가능하지 않다. 나부터 다시 생각해 바꾸고, 조금씩 더 알아나가고, 지금껏 내가 처해왔고 앞으로 처할 날이 창창히 남은 위기들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지금껏 굵기 시되어 있던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나와 비슷한 처지의 많은 여성-자매-들을 나와 같은 여성으로서 생각한다면 이미 세상의 '절반'이 바뀌는 것이다. 그 다음은? 그 때 이미 세상은 달라져 있다.

이화여성위원회의

성폭력 사건 대응 일지

● 1996년 5월 서울대 미팅제안 엽서 사건

사건 개요 서울대 석사 1년생들이 이대 신방과 앞으로 선정적인 포즈의 여성을 걸들인 미팅제안 엽서를 보냄

대 응 여성을 비하하고 성적대상화하는 남성중심적 태도에 문제제기하고 대응

● 1996년 11월 삼성맨 사건

사건 개요 BAR에서 술취한 남자가 이대생의 엉덩이를 고의로 만지고 이대생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음

대 응 삼성맨의 태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성명서 발표와 사과문 요구

● 1997년 4월 안양대 미팅제안 편지 사건

사건 개요 한양대 대학원생이 이대 신방과 4학년 앞으로 미팅제안을 하고 그 이유로 '추위로 인해 움츠러 들었던 물건을 세우기 위해', '학문 탐구에 지친 연구원들에게 심기일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등의 여성비하적인 표현을 함

대 응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남성중심적 성문화가 담긴 표현에 문제제기하고 성명서 발표와 사과문 요구

● 1997년 5월 고대생 집단 성폭력 사건

사건 개요 대동제 기간동안 고대생들이 행사 진행을 방해하고 이화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12년동안 지속됨

대 응 고대생들의 집단 난동을 여성공간에 대한 남성의 성폭력 행위로 정의하고 문제제기

고대생 집단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

고대생 집단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이화인 결의대회 주관

대동제 중 고대생집단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 전개

● 1997년 8월 연세대 익명게시판 사건

사건 개요 연세통신동호회 익명게시판에 이대 공대생에 대해 '이대 공대년을 따 먹었는데', '이대에도 공대가 있다. 그런 쓸데없는 짓을... 괜한 인력 낭비다' 등 여성 비하적인 글이 올라옴

대 응 여성이 공학을 한다는 것에 대한 남성의 편견과 그러한 편견이 성적인 영역에 대한 비하로 이어지는 이 사건을 남성우월적이고 여성편파적인 사회의 그릇된 성의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건으로 규정
연세대 측의 공식사과문 개제와 익명게시판 폐쇄 요구

● 1997년 10월 금호-행당지구 철거지역 성폭력 사건

사건 개요 용역깡패들이 철거지역의 부녀자들에게 성적으로 비하하는 욕설을 퍼붓고 옷을 찢는 등의 성폭력을 행함

대 응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구조화되는 폭력에 대해 문제제기
금호-행당지구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학생 결의대회 주관
행당동 철거주민을 위한 모금운동 전개

● 1998년 3월 온라인 성폭력 사건

사건 개요 채팅을 하는 이대생에게 '너 이틀전에 나랑 잤잖아'라는 말을 하는 등 성적인 모욕을 가한 사건

대 응 이 사건이 익명이 보장되는 온라인 상에서의 성폭력 사건임에 대해 인식하고 남성중심적인 통신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
온라인 성폭력 사례 접수 및 대응
온라인 성폭력 사건 가해자에게 사과문요구
유니텔 측에 가해자의 아이디 해제 요구

●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1997년 8월, 1998년 1월 수요시위 주관

1회 페미니즘 문화제 기간 중 정신대 할머니 그림엽서전

3회 페미니즘 문화제 기간 중 정신대 문제 관련 강연 및 사진전

이화여대, 학내

성인식과 성폭력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 들어가며

여성위원회는 지난 4월 6일부터 30일까지 학내 성인식과 성폭력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 연대회의>에서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학내 성폭력과 성인식 실태에 관한 실질적인 자료 마련을 위해 연대회의 참여학교 중 12개 학교에서 동시에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는 5월 14일 이화여대 중강당에서 있을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 공청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여기에서는 그에 앞서 이화여대생들이 작성한 설문지 결과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려 한다.

설문지는 대형 교양강의실과 동아리방 등 학내에 무작위적으로 총 500부가 배포되었으며 이 중 288부가 수거되었다. 성실하게 설문에 응해 주신 학우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설문지 내용 소개

여기에서의 성폭력이란 성적 괴롭힘, 성희롱, 성폭행을 포함한 상위개념으로서, 성을 매개로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상대에게 가해지는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이야기한다.

설문지는 먼저 I. 성폭력 유형 사례 조사, II. 성인식 조사, III. 성폭력 학칙 제정에 관하여, IV. 성폭력 관련 학내 기구에 대하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어적 유형, 비언어적 유형(개인의 행동, 단체의 행동), 여성에 대한 물리적인 유형(성희롱, 강간·강간미수)으로 성폭력을 세분화하였다.

각 유형에서는 대학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례를 들어 놓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응답자가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을 직시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응답을 내어놓을 수 있다.

- 설문지 분석

■성폭력 유형·사례 조사

- 여성에 대한 언어적 유형

여성에 대한 언어적 성폭력 유형으로 제시한 것은 1. 공적인 자리에서 여성을 무시하는 발언, 2. 여성의 신체나 외모에 대한 모욕이나 조롱, 3. 여성다움에 대한 강요, 4. 여성들을 소외시키거나 불쾌하게 하는 음담패설 및 음란가요 등, 5. 여대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여대라는 이유로 개인의 능력, 자질 등을 과소 평가하는 발언 등이었다.

1과 같은 발언의 경우 전체응답자의 95.9%가 약간 그렇다 이상을 지적하여 성폭력이라고 인식했으며, 58.6%가 그런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5와 같이 여대와 관련된 언어적 성폭력질문에 98.2%가 성폭력으로 생각했으며, 70.8%가 그러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나 여대라는 여성공간에

대한 비하적 발언에 대해 대다수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단순히 편견이나 개인의 의견의 표현이 아닌 성폭력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적 성폭력은 모든 학내 구성원(전체 응답자의 6.4%가 교수에게서, 2.9%가 교직원에게서)에게서 자행 되어지고 있고, 특히 타학교 구성원에 의해 압도적으로 많은 경험을(전체 응답자의 50%이상이 타학교 구성원으로부터 이러한 발언을 들은적이 있다) 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타대생에 의한 언어적 성폭력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언어적 성폭력은 50%이상이 매일 혹은 자주(일주일에 여러번) 경험하고, 93% 이상이 한달에 한 두 번 이상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것이 심각한 성폭력으로 인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언어적 성폭력의 심각성과는 달리 그것에 대한 대처는 그것을 어쩔수 없는 일로 생각하거나, 불편한 분위기 조성을 피하기 위해 해결에 별다른 노력을 않는 경우(45.6%)가 많아 언어적 성폭력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여성에 대한 비언어적 유형 중 개인의 행동

여성에 대한 비언어적 성폭력 유형중 개인의 행동으로는 1. 여성의 신체를 감상하듯 아래위로 훑어보거나 결눈질한다, 2.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교제를 지속적으로 강요한다, 3. 여성 앞에서 음란물(누드 사진, 포르노 만화, 비디오, 포스터 등)을 보거나 돌려보거나 부착한다, 4. 휘파람, 교성, 침을 삼키는 소리 등 성에 관련된 음란한 소리를 여성 앞에서 낸다, 5. 통신망(PC 통신, 삐삐, 전화 등)을 통해 성적 표현을 하거나 음란물을 보낸다, 6. 여성 앞에서 옷을 입은 채로 성기나 성기 주변을 만진다. 또는 성기를 꺼내 놓고 보란 듯이 자위행위를 한다. 등이 있다.

1과 같은 행동의 경우 전체응답자의 97.8%가 약간 그렇다 이상으로 성폭력이라고 인식했으며 68.4%가 그런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5와 같은 온라인 상의 성폭력에 96.4%가 성폭력으로 생각했으며, 36.8%가 그러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나타나는 성폭력을 심각히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언어적 성폭력 역시 타학교 구성원에 의해 많이 자행되는 것으로 나타나 타대생에 의한 비언어적 성폭력이 빈번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1과 같은 유형의 경우 비언어적 성폭력 유형에서도 교수(2.4%), 교직원(2.9%)에 의한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음이 나타나 여성 공간이라는 이대 내에서도 여성은 성폭력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언어적 성폭력은 36.9%이상이 자주(일주일에 여러번) 혹은 가끔씩(한달에 한두번 정도) 경험하고, 90.1% 이상이 이러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11.7%만 행위 당사자에게 잘못이라고 확실히 지적하고 사과를 받아내거나, 1.8%만이 공론화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비언어적인 성폭력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경쓰고 싶지 않아서(26%)이거나, 불편한 분위기를 피하기 위해서(26%), 그리고 대응 방법을 모르거나 없기 때문인 것(41%)으로 나타나 성폭력을 적극적으로 규제할 장치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보여진다.

- 여성에 대한 비언어적 유형 중 단체의 행동

여성에 대한 비언어적 성폭력 유형중 단체의 행동으로는 1. 단체, 모임에서 유독 여성에게만 학업이

나 업무와는 상관없는 잡일을 시킨다. 2. 새터, 동문회 등의 단체 모임에서 여성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는다. 3. 여러 모임에서 여성을 소외시킨다. 4. 술자리에서 남자 사이에 끼어 앉거나 술시중을 들게 한다. 등이 있다.

비언어적 유형의 성폭력 중 단체의 행동의 경우 전체응답자의 90% 이상이 1부터 4까지의 유형 모두에서 약간 그렇다 이상으로 성폭력이라고 인식했다. 또 전체 응답자 중 40% 이상이 거의 대부분의 유형에서 그런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단체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성폭력은 여대의 특성상 조인트 동문회나 조인트 MT연합 동아리등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에서 나타남에도 그 빈도수는 전체 응답자의 10%정도가 그러한 행사가 있을때마다 라고 응답하고 31% 이상이 행사 두세번에 한두번 정도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말해 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당사자에게 잘못이라고 확실히 지적하고 사과를 받아내거나 공론화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는 전체의 30% 정도 뿐으로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는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체의 비언어적인 성폭력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쾌하지만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 같기 때문이다. 예 가장 많은 (50%) 응답을 했는데, 특히 단체 속에서 전체의 분위기를 위해 여성의 대응이 더욱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 여성에 대한 물리적인 유형 중 성희롱

여성에 대한 물리적인 유형 중 성희롱은 1. 의도적으로 가슴, 엉덩이, 성기 쪽으로 기대오거나 손을 댄다. 또는 자신의 성기를 몸에 접촉시킨다. 2. 단체와 모임의 술자리에서 남학우가 불쾌할 정도로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손을 잡거나 안으려 한다. 혹은 술취한 척 몸을 기대오거나 손으로 몸을 더듬는다. 3.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가한다. 4. 권위를 빌미로 접근해서 신체접촉을 한다. 또는 신체 접촉을 요구한다. 등이 있다.

이러한 성희롱의 경우 전체응답자의 90% 이상이 매우 심각한 성폭력이라고 인식했으며 각각의 유형에 있어서 1과 2와 같은 경우는 각각 전체응답자의 30%가 그런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3과 같은 성폭력 경험에 있어서도 37.4%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와 같이 권위를 빌미로 한 성폭력도 17%나 나타났다. 이러한 성폭력은 역시 타학교 구성원에 의해 많이 자행되는 것으로 나타나 타대생에 의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이러한 가해자의 이후 태도는 많은 수 (64%)가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스스럼없이 대한대로 나타나 성폭력 행위에 대해 가해자에게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성희롱은 전체 응답자의 73.7% 이상이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경험이 어느 특정인에게만 혹은 어떤 특정한 경험을 가지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대부분의 여성들이 갖게 되는 경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성희롱에 대한 대처는 다른 성폭력 유형에서 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34.4%가 가해자에게 잘못이라고 확실하게 지적하고 사과를 받아 내거나, 공론화 시키는 등 법적인 대응까지 포함하여 조직적으로 대응(6.8%)하는 등 다른 성폭력 유형에 비해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피해자가 공론화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들이 좀더 쉽게 이러한 성폭력에 대응할 방법의 필요성과 그 홍보의 당위성을 절감할 수 있었다.

- 여성에 대한 물리적인 유형 중 강간, 강간미수

상대적으로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강간, 강간미수 그리고 강제애무나 키스 등의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강제애무나 키스는 전체 응답자의 9.4%가 경험했을 정도로 그 양상이 심각하다. 이러한 성폭력의 가해자는 타학교 구성원이 높았으며,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폭력은 MT나 동아리 그리고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집 근처에서나 개강파티 등에서의 자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의 대응 방안도 법적인 대응을 포함한 공론화가 가장 많이(37%) 거론 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기관에 상의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무말 못하고 고민 했다는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걸로 드러나지 못하고 묻힌 사건들이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대응을 못하는 경우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 중심적인 성폭력 담론이 재구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성폭력 학칙 제정에 관하여

전체응답자의 97.7%가 성폭력 예방과 가해자 처벌을 위해 학칙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성폭력 관련 학칙은 언어·정신적·물리적인 성폭력 모두 징계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70.7%였으며, 전체의 92.3%가 비언어·물리적인 성폭력 모두를 징계대상으로 넣고자 했다.

성폭력 관련 학칙에 의한 징계 유형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공개 사과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제적, 휴학 등 학업을 제한하는 방법, 일정 기간 여성 단체에서 봉사하는 등의 봉사행위를 하는 방법 등에 과반수 정도의 응답자가 찬성했다. 또한 일정 기간 성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33.3%가 찬성을 했으며, 기타 가해자의 집에 통보, 피해보상, 학점에서 마이너스 처리하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성폭력 관련 학내 기구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98.3%가 성폭력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이를 해결하거나 전담하는 기구가 학내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이 중 52.6%가 성폭력 학칙 제정 여부에 상관없이 이러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이화인의 성폭력 전담 기구에 대한 요구를 알 수있었다. 또 그 위상에 대해서도 제정은 학교에서 지원하며, 구성은 전문가와 교수, 학생으로 이루어진 본부 기관을 생각하는 이화인이 가장 많았다. (42.1%)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가안에 대하여

- 대학사회의 성적자율권 확보를 위한 학칙(가안) 해설

〈대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대학내 성폭력의 가장 근본적인 예방과 처벌, 즉 그 근절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한 끝에, 우선 관련 학칙 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었다. 서울대학교 여성모임연대가 1993년 '신교수사건(일명 우조교사건)'을 계기로 내었던 2차 성폭력 학칙 가안을 텍스트로 삼아 새로운 학칙 제정 작업에 들어가, 그 결과의 중간본이 현재 자문 중이다.

제정 작업에 있어서는 각 개념의 정의에 있어 보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관점을 뚜렷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아울러 각 학교의 학내 성폭력 사건을 당사자들과 함께 직접 다룬 경험에서 비롯된 학내 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바탕으로 했다. 그 적용에 있어서 각 기관의 관계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이해들을 극복하고 그를 체결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기에 몹시 섬세한 검토가 있어야 하였다. 적용 과정에 있어 본 목적에 맞는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하여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한다.

1. 목적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은 대학구성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현재의 대학문화는 학내 성폭력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반영되는 현실이 마치 당연한 듯 남성중심적 가치규범기준을 내재하고 있다. 그러한 속에서 교수진과 직원, 학생을 포함한 모든 대학사회 구성원이 자유롭고 인격적인 교육·근로 분위기에서 직업 및 학업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학구성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근절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그에 대해 규정·규제·해결·예방하기 위한 구체절차 및 그 담당인과 기관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이 학칙의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대학사회 성의식과 성폭력 실태에 대한 간단한 보고와 아울러 본 학칙의 위상을 천명하는 전문이 따로 있어야 하고, 총칙에 있어서도 전술한 내용과 같은 학칙의 목적을 밝힘과 아울러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규정과 구체적 모델의 제시로서의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정의

환경형성폭력의 개념을 부분 차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근거상황들을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성을 매개로 하거나 행위 기타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정신적·물리적인 행위가,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든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 개인의 능력과 능률을 비합리적으로 저해하거나 차별적·위협적·적대적·공격적·모욕적인 학업·근로·생활 분위기를 조성할 때 차별적 또는 공격적인 언동이나 타인의

작업에 대한 불합리한 참견들로 적대적인 환경을 구성하여 상처주었을 때. 그리고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에 대한 복종 또는 거부가 개인의 학업평가·고용·인사 또는 학교에서의 다른 일에 대한 참여의 조건에 영향을 끼칠 때. 문제가 되는 행위 또는 발언의 빈도와 정도를 생각하여 지속·반복될 때.

중요한 점은 가해자가 의도적이었더라도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규정한다는 것인데 지금껏 묵살되어왔던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이 기준으로써 유효하다는 것을 제시함이다. 어떤 행위가 '객관적으로' 적대적이었는지 악의가 있었는지 하는, 결과적으로 위해를 가한 이의 입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대방으로서 피해를 받은 이의 입장이 존중되어야 하기에 그러하다.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성은 남녀에게 다른 형태와 다른 의미로 구성되고 적용됨을 인정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상황과 느낄 감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가해자의 행동이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 학칙은 대학구성원들이 타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는 대학문화건설의 한 걸음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농담을 가장한 여성에 대한 평가절하, 남성의 성적인 대상으로 여성을 사고하는 것이 잠재되어있는 발언이나 행위, 옷차림·신체·성적활동에 대한 지나친 언급, 여성배제적인 불쾌한 성적 농담,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인 성별정체성에 의한 여성의 가치에 대한 폄하 발언, 성기중심적인 공개적 행사, 음란물을 공공장소에 부착하는 등의 행위와 같은 것들이 있겠고, 이러한 규정들은 국내외의 여러 모범적인 연구의 예를 참조로 더 보강될 수 있다.

3. 대상

학칙의 적용대상은 학교 구성원이므로 본 학칙 역시 소정의 기준으로 인정된 실질적 역할의 교수, 교직원, 학생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 적용의 정확을 기하여 다음과 같은 형식의 기준을 생각할 수 있다: 교수는 외부교수 이상을, 학생은 본교 재적생들, 교직원은 기성회직 이상을 포함하며, 외인교수 및 교환학생도 대상에 포함된다. 본 조항의 적용시 기준시기는 사건 발생시이며,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 변화는 그 적용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중 일방이라도 이에 포함될 경우에도 본 학칙의 사건 후 관련 조항은 적용되어야 하는데 흔히 여겨지듯 가해자 처벌만이 성폭력 사건 해결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과학적인 피해자 보호와 사건해결 노력에 있어서의 대학내 기구의 연대책임, 과정에 있어서의 각종 교육 등이 본 학칙에 의하여 담보될 것이다.

4. 학내 성폭력 특별위원회의(가)

학내 성폭력특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는 신고된 학내 성폭력 사건의 효과적인 해결을 책임지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총체적 기구가 되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이 정한 징계위원회 회칙에 따르며 이미 징계위원회가 만들어진 사례에서의 활동경과를 참조하여 더 고민할 지점이다. 각 학교의 상황을 스스로 고려하여 회칙의 부분을 수정할 수 있겠으나 교수, 학생, 교직원 등이 동수의 비율을 구성하며 각각의 경우 성비또한 동율로 하는 등의 맥락은 유지해야 할 것이다.

징계위원회는 이미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조사, 중재 및 사후처리를 맡고 가해자 징계회부 및 재교육과 피해자 보상과 그 치료를 전담하고 사건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고를 책임진다. 회칙 개정은 학내 성폭력과 관련한 여러 구성원들이 담당하며 되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효력을 발현시키도록 한다.

5. 피해자 보호

다른 범주의 폭력과는 다르게, 성폭력의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사건의 책임이 전가되거나 여러 단계의 사건해결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비슷한 구조의 또다른 폭력이 가해지게 된다. 이는 사건 후 특히 극심한 심신의 고통과 공포·절망 등을 경험하는 성폭력이라는 범죄의 피해자에게 배려되어야 하는 당연한 처우와 몫시도 거리가 먼 현실의 한 단면이다. 궁극적으로는 법을 다루는 각계의 직업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의식의 전환을 이루어야 하겠으나, 피해자를 직접 대하는 사람들부터 우선 명심해야 할 지점이다.

또한, 대부분의 성폭력이 아는 사이에 발생하고 성폭력의 동기 중 많은 부분이 단지 성욕의 문제가 아닌, 권력의 행사라는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가부장제 사회의 현재에서, 범죄 피해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주장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또다른 범주의 사회적 불이익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는 명확하다.

그러므로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용모 및 소속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성폭력 사건 징계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 추궁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사건 징계과정은 물론 가해자 처벌 이후에도 징계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의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6. 신고인과 신고인의 보호

피해자 당사자는 물론,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공감하는 주변인이 해당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물론 신고인은 앞에 명시된 수위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지점들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7. 신고와 신고기구

사건의 신고인은 서면, 전화, 통신, 직접방문 등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상담실에 신고한다. 기타 학생생활연구소, 여학생부, 지도교수, 학과(부)장, 대학장, 대학총장, 교직원 대표기구, 학생대표기구, 학내 여성관련 단체, 성폭력관련상담소(외부단체) 등에 들어온 사건도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경로를 통해 최종적으로 상담실에 신고되어야 한다.

8. 적용시간

기존의 형법에서는 사건발생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고소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는 등 여러 단계에서 시한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심신의 후유증을 딛고 신고를 결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예가 상당수를 차지하므로 시효규정이 없다고 명시하는 등 그러한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9. 징계내용

일차적으로, 징계수위는 징계위원회의 논의와 결정에 따른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 ㉠ 성폭력이나 성관련 프로그램을 듣는 재교육
- ㉡ 성폭력 상담소 등 외부단체에서의 일정기간 봉사
- ㉢ 자신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명시한 자보, 언론 등을 통해 공개사과
- ㉣ 금전적 피해 배상
- ㉤ -1) 학생: 제적, 무기정학, 유기정학, 근신 등
-2) 교수, 교직원: 해임, 직위해제, 정직, 전직, 감봉 등
-3) 외부인: 징계위원회는 가해자가 속한 구성단체와의 접촉을 통해 징계를 요구한다.
- ㉥ 경고장 발송
-경고장은 공개하며, 경고장 발송 이후에도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징계수위를 높인다.
-이 경우 환경형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참조할 수 있고, 그러한 사례일 경우 경고장 발송 등 현실적으로 최선의 대책일 수 있다.

덧붙여 가해자측이 각종 보복·부인·불이행을 획책하거나 재범일 경우 등에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10. 동조자는 자에 대한 징계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받았음이 명백하였을 때는 그 동조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을 따로이 두는 편이 학칙 제정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에 부합하도록 의미있을 것이다.

11. 성폭력상담실 설치

학교가 학교 내에 성폭력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실장은 상담전문가, 또는 성폭력관련단체의 추천이 있는 교직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한다.

12. 상담실의 위상 및 업무

성폭력 상담실의 위상을 갖는 기구는 학내의 어느 요소로부터도 제약을 받지않는 독자적인 위상을 가진다. 따라서 상담원 교체나 채용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그 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학내 기구로서 재정문제에 있어서 학교의 지원을 받는다. 상담실이 그 영역을 확장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갖는 것도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 있다.

업무 내용은,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대처방안에 대한 학내 교육과 홍보작업으로써 새내기배움터에서의 교육, 정규 성교육 강좌와 특별강연교육 개최, 각종 포스터와 소책자 발간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상시적인 창구를 유지하고 전용상담원을 확보하여 성폭력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병원이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 요구,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의 임무를 진행할 것이다.